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

검 토 보 고 서

I . 제안경위

- 본 승인안은 2015년 6월 10일 서울특별시교육감으로부터 제출되어 2015년 6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II . 결산개요

1. 예산회계 결산

-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액은 7조 7,049억 2천만원으로 전년도 이월금 2,102억 1천 3백만원을 포함한 예산현액은 7조 9,153억 3천 3백만원임.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100.1%인 7조 9,253억 1천 6백만원이고,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7.8%인 7조 7,418억 1천 5백만원임.

[표-1] 세입·세출 결산 총괄

(단위 : 천원)

세입·세출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세입결산액 ①	세출결산액 ②	세계잉여금 ③=①-②
7,704,919,815	210,213,524	7,915,133,339	7,925,316,025	7,741,815,300	183,500,725

- 세입·세출 결산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1,835억원으로, 명시이월액(142억 9천 8백만원)과 사고이월액(417억 2천 9백만원)을 합한 총이월액은 560억 2천 7백만원이며, 국고보조금 집행잔액이 17억 7천 7백만원이고, 지방교육채상환은 0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56억 9천 6백만원임.

[표-2] 세계잉여금

(단위 : 천원)

세계잉여금 ①=②+③+④+⑤	다음연도 이월내역②				보조금 잔액 ③	지방교육채 상환 ④	순세계잉여금 ⑤
	소계	명시이월	사고이월	계속비이월			
183,500,725	56,027,729	14,298,389	41,729,340	0	1,776,796	0	125,696,200

- 세입징수결정액 7조 9,427억 9천 8백만원에 대하여 결산액(수납액)은 7조 9,253억 1천 6백만원으로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78%로 전년도(99.73%)와 비슷한 수준이며 불납결손액은 12억 7백만원이고, 미수납액은 162억 7천 6백만원임.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예산액 7조 7,049억 2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102억 1천 3백만원을 더한 7조 9,151억 3천 3백만원으로, 결산액은 예산현액 대비 95.3%인 7조 7,418억 1천 5백만원임.
- 불용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인 1,172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불용률 2.1%(1,735억 7천 1백만원) 보다 0.6% 감소하였음.

[표-3] 불용액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불용액	불용률(%)
7,915,133	117,290	1.5%

2. 재무회계 결산

가. 재정상태

[표-4] 재정상태표 요약

(단위 : 백만원)

과 목	해당연도(2014년)	직전연도(2013년)
자산	13,594,604	13,611,890
I. 유동자산	386,937	380,510
II. 투자자산	267,877	268,363
III. 유형자산	12,932,200	12,957,567
IV. 무형자산	2,896	2,708
V. 기타비유동자산	4,694	2,742
부채	1,321,559	1,305,548
I. 유동부채	76,780	77,940
II. 장기차입부채	1,243,739	1,226,097
III. 기타비유동부채	1,040	1,511
순자산	12,273,045	12,306,342
I. 고정순자산	11,644,850	11,691,936
II. 일반순자산	628,195	614,406
부채와 순자산 총계	13,594,604	13,611,890

-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총 자산은 13조 5,946억 4백만 원이고, 총 부채는 1조 3,215억 5천 9백만원으로, 총 자산에서 총 부채를 차감한 순자산 규모는 12조 2,730억 4천 5백만원임.
- 자산은 유동자산 3,826억 3천 7백만원(2.8%), 비유동자산 13조 2,076억 6천 7백만원(97.2%)으로 비유동자산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있음.
- 부채는 유동부채 767억 8천만원(5.8%), 장기차입부채 1조 2,437억 3천 9백만원(94.1%), 기타비유동부채 10억 4천만원(0.1%)으로 비 유동부채가 총 부채의 94.2%를 차지함.
- 순자산은 고정순자산이 11조 6,448억 5천만원(94.9%)이고, 일반 순자산이 6,281억 9천 5백만원(5.1%)임.

나. 재정운영

[표-5] 재정운영 요약

(단위 : 백만원)

과목	해당연도(2014년)	직전연도(2013년)
수익	7,791,395	7,836,734
I. 이전수익	7,414,932	7,479,798
II. 자체수익	170,325	185,394
III. 기타수익	206,138	171,542
비용	7,824,692	7,740,133
I. 인적자원운용	3,898,927	3,876,110
II. 교수-학습활동지원	341,929	422,807
III. 교육복지지원	840,867	795,134
IV. 보건/급식/체육활동	309,763	383,191
V. 학교재정지원관리	1,568,703	1,585,928
VI.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3,750	50,501
VII. 평생교육	12,460	13,529
VIII. 직업교육	3,673	4,885
IX. 교육행정일반	64,697	46,555
X. 기관운영관리	36,786	39,332
XI. 지방채상환및리스료	84,269	88,226
XII. 기타비현금지출비용	628,868	433,935
운영차액	-33,297	96,601

○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청의 총 수익은 7조 7,913억 9천 5백만원이고, 총 비용은 7조 8,246억 9천 2백만원이며, 수익과 비용의 운영차액은 332억 9천 7백만원 적자임.

- 수익은 중앙정부이전수익 4조 6,168억 4천 8백만원, 지방자치단체이전수익 2조 6,694억 2천 4백만원, 교육비특별회계이전수익 1,150억 4천 6백만원, 기타이전수익 136억 1천 4백만원 등 이전수익 7조 4,149억 3천 2백만원과 자체수익 1,703억 2천 5백만원 및 기타수익 2,061억 3천 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 비용은 인적자원운용 3조 8,989억 2천 7백만원, 교수-학습활동지원 3,419억 2천 9백만원, 교육복지지원 8,409억 6천 6백만원, 보건/급식/체육활동 3,097억 6천 3백만원, 학교재정지원관리 1조 5,687억 2백만원,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 337억 5천만원, 평생교육 124억 6천만원, 직업교육 36억 7천 2백만원, 교육행정일반 646억 9천 7백만원, 기관운영관리 367억 8천 6백만원, 지방채상환및리스크 842억 6천 9백만원, 기타비현금지출비용 6,288억 6천 8백만원으로 구성되어 있음.

III. 결산 세부내역

1. 세입

- 세입결산은 예산현액 7조 9,151억 3천 3백만원에 대하여 7조 9,427억 9천 9백만원이 징수결정되어 징수결정액 대비 99.78% (전년도 99.73%)인 7조 9,253억 1천 6백만원이 수납됨.

[표-6] 세입결산 총액

(단위: 백만원)

예산액	예산현액 (A)	징수결정액 (B)	수납액 (C)	불납결손액 (D)	미수납액 (E)	예산현액 대비 수납	
						증감(C-A)	수납율(C/A)
7,704,920	7,915,133	7,942,799	7,925,316	1,207	16,276	10,183	100.13%

- 불납결손액은 12억 7백만원으로 수업료 4억 1천 3백만원, 과년도 수입 7억 8천 3백만원 등의 세입결손이 발생하였음.

[표-7] 불납결손액 내역

(단위 : 천원)

과 목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불납결손액	결손내역
입학금	459,711	459,683	0	28	○ 고등학교 자퇴·제적 입학금 결손액 : 28
수업료	141,814,946	140,531,671	869,721	413,554	○ 유치원, 고등학교 자퇴·제적 수업료 결손액 : 13,439 ○ 유치원, 고등학교 지난년도수업료 결손액: 400,115
연체료	216,528	139,256	74,619	2,653	○ 시효완성 공유재산 연체료 : 2,653
과태료	149,998	105,250	37,703	7,045	○ 시효완성 학원·교습소 과태료 : 6,545 ○ 업체파산 학원·교습소 과태료 : 500
과년도수입	18,016,789	2,737,038	14,496,327	783,424	○ 소멸시효 완성으로 인한 과년도수입 결손액 : 783,424
합 계	160,657,972	143,972,898	15,478,370	1,206,704	

- 미수납액은 162억 7천 6백만원으로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89%인 144억 9천 6백만원임.

[표-8] 미수납액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 내역(사유)
계	216,237,133	198,754,799	16,275,656	
수업료	140,712,407	140,227,532	471,436	-고등학교 수업료 미납: 471,436
지난년도수업료	1,102,538	304,138	398,284	-고등학교 지난년도 수업료 미납 : 398,252 -유치원 지난년도 수업료 미납 : 32
사용료수입	4,591,179	4,577,133	14,046	-토지 사용료 미납 : 14,046
수수료수입	718,511	716,301	2,210	-토지감정평가수수료 미납 : 2,210
임대료수입	579,540	517,782	61,758	-토지임대수입 미납 : 61,758
토지매각	39,631,973	39,579,456	52,517	-토지매각대금 미납 : 52,517
기타유형 자산매각	12,380	2,110	10,270	-관용차량매각대금 미납 : 10,270
변상금	983,604	371,693	611,911	-공유재산변상금 미납 : 611,911
위약금	236,968	230,968	6,000	-입찰보증금 위약금 미납 : 6,000
연체료	216,528	139,256	74,619	-공유재산연체료 미납 : 62

구분	징수결정액	수납액	미수납액	미수납 내역(사유)
				-기타연체료 : 13
과태료	149,998	105,250	37,703	-학원·교습소 과태료 미납 : 37
기타제재금수입	6,915	6,865	50	-과태료 체납에 따른 과산금 미납 : 50
기타수입	9,277,802	9,239,277	38,525	-그외수입 미납 : 38,525
과년도수입	18,016,790	2,737,038	14,496,327	-과년도수입 미납: 147,496,327

2. 세출

가. 세출총괄

-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예산액 7조 7,049억 2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102억 1천 3백만원을 합한 7조 9,151억 3천 3백만원으로, 이 중 결산액은 7조 7,418억 1천 5백만원이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560억 2천 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1,170억 9천만원임.

[표-9] 세출결산 총액

(단위 : 천원)

예산액	전년도이월액	예산현액 ①	결산액 ②	다음연도이월액 ③	집행잔액 ④=①-②-③
7,704,919,815	210,213,524	7,915,133,339	7,741,815,300	56,027,729	117,290,310

나. 이월액

- 다음연도 이월액 총액은 명시이월액 142억 9천 8백만원과 사고이월액 417억 2천 9백만원을 합한 560억 2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 (2,102억 1천 4백만원) 보다 1,541억 8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표-10] 이월액

(단위 : 백만원)

예산현액	다음연도 이월액					이월률(%)
	계	명시이월비		사고이월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915,133	56,027	20	14,298	82	41,729	0.7%

다. 채권·채무

- 2014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893억 2백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액 대비 426억 4천만원이 감소하였음.
- 채권의 주요내용을 보면, 토지매각대 18억 3천만원, 토지매각대분 할납부이자 4억 4천 9백만원, 원어민영어교사 전세자금 38억 1천 5백만원, 대지료 3억 7천 5백만원, 대가료 6백만원, 수업료 8억 7천만원, 기타 사용료 2백만원, 변상금 73억 2천 9백만원, 위약금 20억 7천 2백만원, 그외수입 52억 7천 4백만원, 대여장학금 2,672억 8천만원 등임.
- 2014년도말 채무 현재액은 3,732억 2천 5백만원으로 2013년도말 현재 채무액 3,312억 2천 2백만원보다 620억 3백만원이 증가하였음.

[표-11] 채권·채무 현황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중 증감액	2014년도말 현재액	증감율(%)
채권	331,942	△42,640	289,302	△12.8%
채무	331,222	62,003	373,225	18.7%

라. 재산 현황

1) 공유재산

- 201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9조 518억 2천만원으로 행정재산이 28조 8,574억 8천 8백만원, 일반재산 1,943억 3천 2백만원이며 이는 2013년도말 28조 6,303억 5천 2백만원 보다 4,214억 6천 8백만원이 증가한 것임.

[표-12] 공유재산 현황

(단위 : 천원)

용도별	전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 말)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14년도 말)	
		증	감(△)	비교증감(계)		
합 계	28,630,351,856	895,328,104	473,859,363	421,468,741	29,051,820,597	
행정 재산	소 계	28,420,173,356	764,553,469	327,238,396	437,315,073	28,857,488,429
	공용재산	28,419,508,451	764,228,813	327,219,246	437,009,567	28,856,518,018
	공공용재산	0	0	0	0	0
	기업용재산	0	0	0	0	0
	보존재산	664,905	324,656	19,150	305,506	970,411
일반재산	210,178,500	130,774,635	146,620,967	△15,846,332	194,332,168	

2) 물품

- 2014년도말 물품은 수량 38,624개, 금액 1,014억 1천 7백만원으로 2013년도말에 비해 수량은 270개 증가하였고 금액은 4억 1천 5백만원 증가하였음.

[표-13] 물품

(단위 : 천원)

품 종 별	전년도말 현재액 (2013년도 말)	당해연도중 증감액			당해연도말 현재액 (2014년도 말)
		증	감(△)	비교증감(계)	
미니버스 외 20종	101,002,752 (38,354)	12,898,803 (2,372)	12,483,764 (2,102)	415,039 (270)	101,417,791 (38,624)

※()는 수량임

Ⅲ. 검토보고(수석전문위원 김창범)

1. 결산총괄

-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현액은 예산액 7조 7,049억 2천만원과 전년도 이월액 2,102억 1천 3백만원을 더한 7조 9,151억 3천 3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3,409억 3백만원 (4.1%) 감소하였음.
- 세입결산액은 예산현액 7조 9,151억 3천 3백만원에 대하여 수납액이 7조 9,253억 1천 6백만원으로 예산현액 대비 수납율은 100.1%이고, 불납결손액은 전년도 보다 5억 6천 4백만원이 증가된 12억 7백만원이며, 미수납액은 전년도 보다 52억 2백만원이 감소된 162억 7천 6백만원임.
- 세출결산액은 예산현액대비 97.8%인 7조 7,418억 1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95.3%) 대비 2.5% 증가하였고,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전년도 2.5%)인 560억 2천 8백만원이며, 집행잔액은 예산현액 대비 1.5%(전년도 2.1%)인 1,172억 9천만원이 발생함.
- 한편 세입·세출 차감액인 세계잉여금은 1,835억 1백만원이며, 순세계잉여금은 1,256억 9천 6백만원(예산현액 대비 1.6%)으로 세계잉여금에서 다음연도 이월액 560억 2천 7백만원(예산현액 대비 0.7%)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7억 7천 7백만원을 차감한 금액임.
- 이월액의 경우 전년에 비해 1.8% 감소하였고 미수납액의 경우도 전년 보다 24.2% 감소하는 등 재정운영 상황은 다소 건전화된 것으로

로 보이나 한편으로는 불납결손액이 증가하고 있음.

2. 세입결산

- 예산현액 대비 수납액 비율이 100.1%로 전년도(98.9%)보다 1.2% 증가하였으며, 징수결정액 7조 9,427억 9천 8백만원 대비 수납액 비율은 99.78%로 전년도(99.73%)와 비슷한 수준임.

가. 세입재원별 결산

- 세입재원별 결산내역을 살펴보면, 이전수입이 90.5%, 자체수입은 2.6%, 지방교육채 3.1%, 이월금 3.8%로서 자체수입 비중은 전년도 대비 0.2% 감소한 반면, 이전수입 비중은 전년도 대비 1.2% 증가하여 교육재정의 의존성이 더욱 심화되어 있고 지방교육채의 세입 비중도 전년도 1.6%에서 3.1%로 증가하여 현재 서울시교육청의 재정구조가 점점 열악해지고 있다고 할 수 있음.

[표-14] 세입 재원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현액	결산액	비고	
			결산액 구성비율(%)	예산현액대비 수납률(%)
이전수입	7,164,264,334	7,176,075,103	90.5	100.2
지방교육재정교부금	4,589,798,933	4,597,975,000	58.0	100.2
국고보조금	18,953,130	18,953,130	0.2	100.0
법정이전수입	2,486,308,676	2,486,960,654	31.4	100.0
비법정이전수입	56,800,650	58,572,145	0.7	103.1
민간이전수입	8,400,589	9,611,818	0.1	114.4
자치단체간이전수입	4,002,356	4,002,356	0.1	100.0
자체수입	209,117,764	208,146,633	2.6	99.5

구 분	예산현액	결산액	비고	
			결산액 구성비율(%)	예산현액대비 수납률(%)
기본적교육수입(입학금및수업료)	142,355,283	140,991,353	1.8	99.0
선택적교육수입(평생학습수입 등)	2,648,367	1,836,281	0.0	69.3
사용료및수수료수입	5,432,000	5,293,435	0.1	97.4
자산임대수입	489,920	517,783	0.0	105.7
자산매각대	39,974,080	42,144,960	0.5	105.4
이자수입	4,000,000	4,117,132	0.1	102.6
적립금이자수입	0	792	0.0	792.0
보증금회수	30,000	414,550	0.0	1381.8
제재금수입	547,477	854,032	0.0	156.0
기타수입	13,000,000	9,239,277	0.1	71.1
과년도수입	640,637	2,737,038	0.0	427.2
지방교육채	243,043,845	242,143,145	3.1	99.6
이월금	298,707,396	298,951,144	3.8	100.1
합 계	7,915,133,339	7,925,316,025	100.0	100.1

- 더욱이 현재의 지방교육재정교부금 산정방식 하에서의 세입재원 조달은 한계상황에 도달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육복지사업의 확대에 의한 사업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시·도 교육청 재정현실에 부합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의 확대를 정부와 국회에 적극적으로 요구할 필요가 있음.

나. 불납결손액

- 올해 불납결손액은 12억 7백만원으로 전년도 보다 5억 6천 5백만원 증가하였는바, 지난년도수업료 및 과년도 수입 등의 시효가 완성됨에 따

른 결손액이 11억 5천 2백만원(불납결손 총액 대비 95.5%)에 이르고 있음.

-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시효완성 전에 청구, 승인, 압류 또는 가압류와 가처분 등의 적극적인 권리행사를 통해 시효중단에 따른 세입결손을 방지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채무자의 재력부족으로 인한 수업료 미납의 경우에는 가정형편이 어려운 학생에게 장학금 지원을 늘리는 등 대체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표-15] 소관별·사유별 불납결손액

(단위 : 천원)

기관	과목	불납 결손액	사 유 별								비고 (기타사유의 건별내역)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합계		1,206,704	5	5,440	1	26	502	1,151,994	116	49,244	
본청											
	입학금	28							2	28	-제적, 퇴학 등 2건
	수업료	13,439	1	1,088			2	185	90	12,166	-제적, 퇴학 등 : 90건
	지난년도 수업료	400,116	4	4,352	1	26	427	380,474	19	15,264	-제적, 퇴학 등 : 19건
교육지원청별											
강남	과년도수입	653,358					1	653,358			
강동 송파	과태료	500							1	500	-학원업체폐업 : 1건
	과년도수입	62,146					5	47,576	2	14,570	-학원업체폐업 : 1건 -공사업체폐업 : 1건
동부	과년도수입	9,000					7	9,000			
동작 관악	과년도수입	21,403					3	21,403			
북부	연체료	2,653					7	2,653			
	과년도수입	29,016					11	22,300	2	6,716	-공유재산 매각 계약 해지 : 2건

기관	과목	불납 결손액	사 유 별								비고 (기타사유의 건별내역)
			무재산		거소불명		시효완성		기타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성 동 광 진	과태료	6,545					23	6,545			
	과년도수입	8,500					16	8,500			

다. 미수납액

-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 대비 7.5%인 162억 7천 6백만원으로 전년도 9.3%(214억 7천 8백만원) 보다 1.8% 감소하였음.

과년도수입 미수납액의 사유별 원인을 살펴보면, 채무자 거소불명이 1억 3천 4백만원, 채무자 재력부족이 123억 4백만원, 납부자태만이 13억 1천 3백만원, 재산압류중이 12억 4천 6백만원, 기타 12억 1천만원으로 나타나며, 채무자 재력부족으로 인한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의 75.6%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저소득층을 위한 장학제도의 확대 등을 통해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임.

- 한편 납부자태만의 경우에는 성실납부자와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가압류, 가처분 등의 법적 조치를 비롯한 적극적인 세입확충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3. 세출결산

- 세출결산액은 7조 7,418억 1천 5백만원으로 세출 성질별로 인건비가 3조 2,356억 3천 7백만원, 물건비 2,901억 4천 8백만원, 이 전지출 9,131억 2천 1백만원, 자산취득 3,201억 4천 9백만원, 상환지출 2,821억 6천 8백만원, 전출금 등 2조 6,968억 7천 6

백만원 그리고 예비비 및 기타 37억 1천 5백만원임.

[표-16] 세출 성질별 결산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예산현액	결산액	구성비(%)	비고
인 건 비	3,251,146,685	3,235,637,407	41.8	
물 건 비	300,154,241	290,147,723	3.7	
이전지출	924,868,602	913,121,551	11.8	
자산취득	407,452,344	320,149,308	4.1	
상환지출	283,703,914	282,168,511	3.6	
전출금 등	2,742,554,642	2,696,875,925	34.8	
예비비 및 기타	5,252,911	3,714,875	0.0	
합 계	7,915,133,339	7,741,815,300	100.0	

가. 불용액

- 불용액은 예산현액 7조 9,151억 3천 3백만원의 1.5%인 1,172억 9천만원으로 전년도 불용액 1,735억 7천 1백만원(불용율 2.1%)보다 562억 8천 1백만원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전년도에 비해 개선되었음.

그러나 열악한 교육재정으로 인하여 교육환경개선사업 등의 시설사업비가 여전히 부족한 상황임을 고려할 때 사업계획 수립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통해 불용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2014년도 세출예산 불용액 원인별 내역을 보면, 계획변경 및 취소로 174억 4천 6백만원이 불용되어 전년도 124억 4천 4백만원보다 오히려 50억 2백만원 증가하였고, 지급사유 미발생도 173억 1천 5백만원으로 전년도(99억 8천 7백만원) 보다 73억 2천 8백

만원이 증가하였음. 반면에 예산집행잔액은 825억 2천 9백만원으로 전년도 1,511억 3천 5백만원 보다 686억 6백만원이 감소하였음.

- 전체 불용사업 중 70%는 예산집행잔액으로 인한 불용으로 전년도에 예산집행잔액 불용율 87%보다 17% 감소하였다는 점에서 다소 개선되었다고 할 수 있겠으나,

불용액 발생 사유 중 지급사유 미발생 잔액의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감액 조치함으로써 불용액 발생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다른 필요한 사업예산으로 충당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예컨대 불용액 발생 사업 중 학교교육여건개선시설사업의 경우는 전체 불용액의 32.2%인 378억 6천 9백만원이 불용되었는바, 이 중 계획변경 및 취소에 따른 불용액이 138억 5천 7백만원 (36.5%)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사업내용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과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할 것임.

- 불용액의 과다발생은 재정운용계획의 방만성을 방증하는 것으로 불요불급한 사업에 대한 예산배정으로 인해 재원이 절실히 필요한 다른 사업의 추진기회를 박탈하여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됨. 따라서 서울특별시교육청은 면밀한 사업계획을 통해 집행잔액이나 계획변경 및 취소로 인한 불용액 발생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 세부사업별로 살펴보면, 2014회계연도 불용액 10% 이상 발생사업은 총 27건이고 30% 이상인 사업은 총 6건임.

[표-17] 불용율 10% 이상 사업

(단위 : 원)

연도	세부사업	예산현액 (A)	지출금액 (B)	불용액 (D)	불용률 E=D/A
1	감사관리	215,848,000	190,150,670	25,697,330	12%
2	교직원복지대여	358,907,000	305,047,860	53,859,140	15%
3	비상대비계획및보안관리	94,457,000	68,086,490	26,370,510	28%
4	지방공무원연수지원	443,454,000	333,889,520	109,564,480	25%
5	행정서비스관리	1,475,000	-	1,475,000	100%
6	계약제직원인건비	8,380,918,000	6,181,729,710	2,199,188,290	26.2%
7	대외교육협력관리	7,140,000	5,437,490	1,702,510	23.8%
8	비정규직인사관리	40,200,000	7,370,810	32,829,190	81.7%
9	예비비	1,485,029,000	-	1,485,029,000	100.0%
10	예산관리	746,540,000	620,218,070	126,321,930	16.9%
11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	2,584,890,250	2,315,014,460	269,875,790	10.4%
12	교직원단체관리	236,397,000	199,044,241	37,352,759	15.8%
13	법무관리	810,815,000	720,999,610	89,815,390	11%
14	기타교육비지원	1,289,376,000	1,008,853,280	280,522,720	22%
15	교원연수지원	1,915,191,000	1,690,720,030	224,470,970	11.7%
16	마이스터고운영지원	4,220,000,000	2,229,919,800	1,990,080,200	47%
17	학교보건관리	2,194,463,000	1,909,487,540	284,975,460	13%
18	진학시험및입학전형지원	1,577,385,000	1,136,128,670	441,256,330	28.0%
19	학교신증설	234,048,967,110	189,023,128,645	25,297,768,485	10.8%
20	일시차입금관리	108,219,000	-	108,219,000	100.0%
21	본청시설관리	292,390,000	178,762,140	113,627,860	39%
22	직속기관시설관리	7,440,189,180	5,464,315,840	1,967,041,840	26%
23	학교시설증개축	30,023,828,225	18,756,784,045	6,821,846,350	23%
24	교과교육연구회지원	306,420,000	267,004,900	39,415,100	13%
25	학교평가관리	581,775,000	493,975,030	87,799,970	15.10%
26	교원연수운영	2,861,280,000	2,532,120,930	329,159,070	11.5%
27	지방공무원연수운영	744,535,000	668,026,830	76,508,170	10.3%

나. 이월액

- 다음연도 이월액은 예산현액 대비 0.7%에 해당하는 560억 2천 7백만으로 전년대비(2,102억 1천 4백만원) 1,541억 8천 7백만원이 감소하였음. 다음연도 이월액 중 명시이월은 142억 9천 8백만원이고 사고이월은 417억 2천 9백만원임.
- 각 회계연도의 경비는 당해연도의 세입으로 충당해야 하며 매 회계연도의 세출예산은 다음연도에 사용할 수 없으나, 「지방재정법」은 예산운영상 신축성을 유지하기 위해 예외로서 명시이월, 사고이월 및 계속비이월 등의 제도를 두고 있음.

1) 명시이월

- 명시이월이란 세출예산 중 해당 연도 내에 지출을 집행하지 못할 것이 예측되는 항목에 대해 미리 지방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이월해 사용하는 것임.
 - 2014회계연도 명시이월의 내역은 총 20건으로, 주요 이월사업은 학부모교육참여 지원, 평생교육시설및운영지원, 장애학생직업능력개발센터설립, 진로직업체험지원센터 운영, 방일초·신상도초·은평대영학교 석면해체제거, 고명초 등 학교급식환경개선, 거여고 등 학교신설, 답십리초 교사동 교실바닥 개선 등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임.
 - 주요 명시이월 사유는 주로 교육부 특별교부금의 연도말 교부에 따른 연도내 사업 추진 불가능이 대부분인바, 특별교부금은 교육에 필요한 재원을 국가가 교부하여 지역간 교육의 균형발전을 도모하

기 위한 것으로 국가시책사업은 매년 1월 31일에, 지역현안사업과 재해대책비는 수요가 발생하였을 때 교부하도록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월에 집중적으로 교부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음.

따라서 교육청은 교육부와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교부시기를 앞당길 수 있도록 하고 이를 통해 사업의 조기집행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 한편, 부지조성 및 지자체와 협의 지연 문제 등은 사업의 타당성 여부보다 사업계획 시 행정절차나 법적인 문제를 사전검토하지 않아 생긴 것으로도 볼 수 있는바, 향후 이러한 사유로 인한 명시이월이 반복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할 것임.

2) 사고이월

- 사고이월은 당해연도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공사기간 연장 등의 사업시기 조정의 불가피한 사정이 발생하여 연도 내 예산지출을 끝낼 수 없는 경우에 예산을 다음연도로 넘겨서 사용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2014회계연도 사고이월 내역은 총 82건임.
- 이월사업은 학교급식환경개선, 학교시설증개축, 학교시설교육환경개선 등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이월사유는 방학 중 공사·동절기 공사 중지·추경예산편성으로 인한 공사기간 절대 부족 등임.
- 사고이월 내역 중 이월율이 90%인 사업은 총 33건의 139억 9천 8백만원으로 특별교부금 및 서울특별시 전입금의 경우 연도말 교부 등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하여 이월하였다고 할 수 있음.

그러나 자체재원 사업의 경우는 민원발생, 협의 장기화로 인한 사업 지연 등 사업예측 실패에 따른 이월로 볼 수 있는 바, 사고이월 최소화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 이와 관련하여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지방재정법」 제50조에 규정된 1) 사고이월 취지에 따라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등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사고이월 제도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이월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표-18] 이월률 90% 이상 사업

단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률
합 계		14,480.13		13,998.13	96.7%
1	공공형 사립교육기관 운영모델에 관한 연구	21	0	20	95.60%
2	서울미래학교설립	338	0	312	92.33%
3	고척중 급식실맞학생식당증축	1,591	0	1,585	99.60%
4	광성해맑음학교 장애인편의시설개선	3	0	3	100.00%
5	새롬학교 장애인편의시설개선	0.13	0.00	0.13	100.00%
6	서울삼성학교 장애인편의시설개선	42	0	42	100.00%
7	예일디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150	0	150	99.97%
8	충암고 옹벽보수보강	65	0	65	99.58%

1)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 중 경비의 성질상 그 회계연도에 그 지출을 마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세입·세출예산에 그 취지를 분명하게 밝혀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세출예산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비의 금액은 사고이월비(事故移越費)로서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한 경비와 지출하지 아니한 그 부대 경비
2. 지출원인행위를 위하여 입찰공고를 한 경비 중 입찰공고 후 지출원인행위를 할 때까지 오랜 기간이 걸리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3. 공익·공공 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손실보상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4. 경상적 성격의 경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비

③ 계속비의 회계연도별 필요경비 중 해당 회계연도에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그 계속비의 사업완성 연도까지 차례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을 이월할 때에는 그 이월하는 과목별 금액은 이월 예산으로 배정된 것으로 본다.

연도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이월액	이월률
9	고척고 급식실및학생식당증축	1,500	105	1,365	91.00%
10	서서울생과고 기타사업 (위험전주철거및고압선지중화공사)	45	0	44	97.52%
11	신창중 외벽개선	164	9	150	91.65%
12	세그루패션디자인고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1,070	0	1,070	100.00%
13	세그루패션디자인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112	0	112	100.00%
14	정의여고 정문개선및주차장환경개선공사	430	0	425	98.91%
15	경기여자상업고등학교 별관외벽방수공사	50	0	50	100.00%
16	서울디지털고 후면옹벽및위험통학로개선공사	157	0	157	100.00%
17	거여고 학교신설	620	4	616	99.27%
18	상일미디어고 외벽개선	529	0	529	100.00%
19	서울컨벤션고 다목적농구장	50	0	50	100.00%
20	강동고 화장실개선	419	0	393	93.70%
21	보인중 운동장스탠드보수	280	0	280	99.97%
22	신월중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1,450	61	1,385	95.49%
23	한서고 노후조리기구교체및확충	132	0	132	100.00%
24	강서고 본관후면외벽보수공사	35	0	35	100.00%
25	마포고 체육관동노후외벽보수	379	0	370	97.58%
26	신월중 엘리베이터및주변시설설치	200	12	181	90.60%
27	왕복초 교실증축공사	919	22	865	94.19%
28	방배중 외벽개선공사	499	13	482	96.59%
29	수도전기공업고등학교 기계동옥상방수	290	0	290	100.00%
30	상현중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1,000	37	947	94.70%
31	봉현초 옥탑보수	54	2	51	95.22%
32	당곡초 연결복도	416	21	395	94.95%
33	구의중 강당겸체육관증축	80	0	80	100.00%
34	수송초 복합화시설	500	0	500	100.00%
35	고려대부속중 별관동보강공사	690	0	681	98.75%
36	홍대부고 경사지 긴급보수	200	11	186	92.87%

- 사고이월 사업 중 학교시설사업의 경우는 세부사업의 종류가 다양하고 담당부서도 서로 다르며 안전사고 우려나 학사일정 관계로 인한 사업 지연 등으로 사고이월이 매년 전례답습적 발생되고 있음.

따라서 추진사업에 대한 면밀한 사전검토를 통해 설계기간 및 공사기간에 대한 예측력을 증대하고 이월 예상사업에 대해서는 설계비와 공사비 회계연도를 분리하여 편성하는 등의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또한 사전예측이 가능한 경우에는 명시이월과 계속비이월제도를 활

용함으로써 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존중하여 예산집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다. 이용·전용·이체

- 예산의 이용은 예산의 장·관·항(입법과목) 사이에 상호 융통하는 것으로 예산집행상의 필요에 의하여 미리 의회의 승인을 얻은 경우와 조직 등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또는 폐지로 그 직무와 권한에 변동이 있을 때 할 수 있으나 2014회계연도에는 예산 이용은 없음.
 - 예산의 전용은 집행부 재량으로 예산중 행정과목인 각 세항·목 간의 상호변경을 통하여 예산집행에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 2014회계연도에는 문화예술교육활성화 등 48건의 239억 6천 7백만원의 예산전용이 있었는데, 전년도 157억 9백만원보다 82억 5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 예산의 전용은 예산의 목적 외 사용금지 원칙의 예외로서 제한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으로 불가피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산전용 건수와 규모를 줄일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신중한 예산편성을 해야 할 것임.
- 특히 독서논술교육활성화, 학부모및주민교육참여확대 등 운영비를 전입·전출과목으로 한 전용이 33건에 이르고 있다는 점에서 운영비에 대해서는 지난 몇 년간 집행실태를 분석하여 가급적 실수요에 맞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 예산의 이체는 회계연도 중에 예산편성 시 고려하지 못한 지방자치단체의 기구·직제 또는 정원에 관한 법령이나 조례의 제정 또는

개·폐로 인하여 관계기관 사이에 직무권한 등의 변동이 있을 때
에, 그 예산을 이관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것임.

- 2014회계연도 예산의 이체는 「서울특별시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
례」 및 동 조례 규칙 개정으로 분장 사무를 조정하게 됨에 따라 평
생진로교육국 학교생활교육과 소관의 업무가 교육정책국 초등교육과
로 이관되어 발생한 것임. 총 이체액은 398억 9천 5백만원이고 이
체승인일은 2014년 3월 24일로 별도 문제는 없는 것으로 보임.

라. 채권

- 2014년도말 채권 현재액은 2,893억 2백만원으로 전년도 대비
426억 4천만원 감소하였음.

[표-19] 채권 종류별 현황

(단위 : 천원)

종류별	2014년도중 발생액	2014년도중 소멸액	2014년도말 현재액
합계	2,050,062	44,690,417	289,302,628
토지매각대	650,424	37,978,392	1,830,065
토지매각대분할납부이자	71,827	170,898	448,968
원어민영어교사전세자금	0	65,000	3,815,000
대지료	73,285	34,534	374,600
대가료	2,519	0	5,718
수업료	476,568	708,056	869,721
기타사용료	2,210	493	2,210
변상금	611,666	628,062	7,329,282
위약금	83,578	4,884,897	2,072,494
그외수입	77,985	220,055	5,274,366
대여장학금	0	30	267,280,204

- 최근 3년간의 연도말 채권현재액은 각각 2012회계연도 2,884억 5천
8백만원, 2013회계연도 3,319억 4천 3백만원으로 계속 증가 추세였
으나, 2014회계연도에는 토지매각대 379억 7천 8백만원 등에 대한

채권이 소멸하여 감소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서울특별시교육청 채권보유액(수업료 미납 및 이행기간 미도래 분 제외) 구성현황을 소멸시효에 따라 구분해 보면 소멸시효가 완성되거나 소멸시효의 여부조차 파악되지 못하는 채권액이 전체 채권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약 35%에 이르고 있는 바 채권관리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서울시 교육청은 채권보전을 통한 세입 확보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표-20] 소멸시효 완성여부에 따른 채권 현황

(단위: 천원)

구 분	채권금액		채권건수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소멸시효 확인 불가 채권	1,816,164	11.8	519	8.6
소멸시효 완성채권	3,505,570	22.8	2,469	41.1
소멸시효 미완성 채권	10,081,512	65.5	3,019	50.3
합 계	15,405,934	100.0	6,007	100.0

마. 공유재산 및 물품 현재액

- 2014년도말 공유재산 현재액은 29조 518억 5천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4,214억 6천 8백만원이 증가하였음. 공유재산을 용도별로 보면, 행정재산이 28조 8,574억 8천 8백만원(99.3%)이고 일반재산이 1,943억 3천 2백만원(0.7%)임. 종류별로 보면, 토지가 867억 7천 1백만원, 건물이 3,275억 7천 7백만원 증가하였음.
- 2014년도말 물품보유액은 1,014억 1천 7백만원으로 전년도말 대비 수량은 270개 증가하였고 현재액은 4억 1천 5백만원 증가함.

[표-21] 물품 현재액

(단위 : 수량-개, 금액- 백만원)

구분	2013년도말 현재액		2014년도 중 증감액				2014년도말 현재액	
	수량	금액	증가		감소		수량	금액
			수량	금액	수량	금액		
합계	38,354	101,002	2,372	12,900	2,102	12,484	38,624	101,418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공유재산과 물품에 대한 변동내역을 정확히 반영하여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공유재산의 무단점유나 부당사용에 대해서는 변상금 부과, 시효중단 조치 등을 취하여 물품에 대한 관리 전환의 적정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임.

또한 사용가능한 물품을 매각하거나 용도폐기하지 않도록 함은 물론 수요량보다 과다하게 물품을 구입·보유하지 않도록 지속적으로 재산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바. 기타 검토의견

1) 특별교부금 교부시기의 문제

○ 특별교부금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5조의22)에 따라 국가시

- 2) 제5조의2(특별교부금의 교부) ① 교육부장관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따라 특별교부금을 교부한다. 다만, 제3호의 규정에 의한 금액의 사용잔액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교육부장관이 지방교육행정 및 지방교육재정의 운용실적이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재정지원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
1. 「지방재정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전국에 걸쳐 시행하는 교육관련 국가시책사업으로 따로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원하여야 할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60에 해당하는 금액
 2. 기준재정수요액의 산정방법으로 포착할 수 없는 특별한 지역교육현안수요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
 3. 보통교부금의 산정기일후에 발생한 재해로 인하여 특별한 재정수요가 있거나 재정수입의 감소가 있는 때 : 특별교부금 재원의 10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
- ② 교육부장관은 제1항제2호 및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경우에 이를 심사하여 교부한다.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또는 교육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일정한 기준을 정하여 특별교부금을 교부할 수 있다.
-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특별교부금은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책사업수요, 지역현안사업수요, 재해대책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교부되는 재원임.

- 2014회계연도 특별교부금 총액은 1,714억 1천 8백만원으로 집행액은 1,420억 6천 2백만원(82.9%)이고, 이월액은 155억 2천 1백만원(9%)이며, 집행잔액은 138억 3천 5백만원(8.1%)임. 그리고 이월액 중 87억 4천 4백만원(56.3%)은 특별교부금의 연도말 교부로 인하여 전액 이월된 사업임.

[표-22] 연도말 교부로 인하여 전액 이월한 특별교부금 사업내역

(단위 : 천원)

교부일	사업명	내역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11-04	지역현안	방일초 석면해체제거	447,000		447,000	
11-04	지역현안	신상도초 석면해체제거	373,000		373,000	
11-04	지역현안	은평대영학교 석면해체제거	236,000		236,000	
11-04	지역현안	상일미디어고 본관 노후 외벽 보수	529,000		529,000	
11-04	지역현안	서울디지털고 후면 옹벽 및 위험 통학로 개선	157,000		157,000	
12-12	지역현안	장애학생직업능력개발센터설립	1,018,000		1,018,000	
12-12	지역현안	홍은초 본관및동관연결통로설치	300,000		300,000	
12-12	지역현안	인헌초 방송시설개선	145,000		145,000	
12-12	지역현안	도봉중 본관중연창개선	187,000		187,000	
12-12	지역현안	답십리초 교사동교실바닥개선	432,000		432,000	

④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변경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⑤ 교육부장관은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건이나 용도를 위반하여 특별교부금을 사용하거나 2년이상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반환을 명하거나 다음에 교부할 특별교부금에서 이를 감액할 수 있다.

⑥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우수한 지방자치단체의 선정기준·선정방법 및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따른 교부시기 등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교부일	사업명	내역	교부액	집행액	이월액	집행잔액
12-12	지역현안	봉현초 본관교실바닥개선	270,000		270,000	
12-12	지역현안	고명초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1,107,000		1,107,000	
12-12	지역현안	구로고 급식실신증축및학생식당보수	1,581,000		1,581,000	
12-12	지역현안	강남초 급식실및학생식당신증축	919,000		919,000	
12-12	지역현안	봉화초 본관동 교실바닥 개선	363,000		363,000	
12-12	지역현안	신현중 학생식당 및 강당 보수공사	680,000		680,000	
합 계			8,744,000		8,744,000	

- 일반적으로 사업은 계획수립부터 시행까지 많은 시간이 소요됨에도 불구하고 교육부는 단기에 예산집행이 이루어질 수 없는 연도말에 특별교부금을 집중적으로 교부하는 것이 관행화되어 있는 상황임.
- 통상적으로 국가시책사업에 소요될 재원은 법령상 매년 1월 31일에 교부되는 것이 원칙인 만큼³⁾ 서울특별시교육청은 교육부와의 긴밀한 협의를 통해 국가시책사업의 경우 피동적으로 재원을 교부받아 배분하는 일로 그칠 것이 아니라 사업 본래의 취지와 목적이 잘 달성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사업시기 조정에 노력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3)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시행규칙

제5조(특별교부금의 교부절차 및 교부시기) ① 시·도의 교육행정기관의 장이 법 제5조의2제2항 전단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교부금을 신청하는 때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예상되는 투자효과가 기술된 사업계획서 그 밖에 특별교부금의 교부에 필요한 관련 서류를 교육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육부장관은 특별교부금을 다음 각 호에서 정한 시기에 교부한다. 다만, 제1호의 시책사업수요에 대한 특별교부금의 교부시기는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그 시기를 조정할 수 있다.

1. 시책사업수요 : 매년 1월 31일
2. 지역교육현안수요 : 당해 지역 교육현안 수요가 발생한 때
3. 재해대책수요 : 당해 재해대책수요가 발생한 때

또한 지역교육현안 사업의 경우에도 계획적인 재정운용을 통한 예산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연도말 특별교부금의 교부로 인한 과도한 사고이월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음.

2)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의 투명성 강화

-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은 회계연도 중 재해대책, 응급보전, 교육현안사업 지원 등 특별한 재정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경비로써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예산액의 0.1% 이하로 편성함. 동 지침에 따르면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예산은 여비, 업무추진비 및 교직원 복지지원 예산으로는 사용할 수 없도록 되어 있으며, 1억원을 초과하는 시설공사는 반드시 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되어 있음.⁴⁾
- 그러나 2014년도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의 사용내역을 보면, 대학수학능력시험장 방송시설 개선에 총 1억원을 지원하였는바, 대학수학능력시험 대비 방송시설개선사업은 사업내용이나 사업규모로 볼 때 학교환경개선사업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었던 사업인 만큼 이를 특별교육재정수요재정지원 사업으로 지출한 것의 타당성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생각됨.
- 그동안 특별교육재정수요지원사업은 지원대상이 구체적이지 않고 세부사업별이 아닌 총액으로만 편성되어 교육감의 재량으로 집행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어왔는바 재정운용의 투명성 확보차원에서 보다 명확한 예산집행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4) 2014년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2013. 11), p55.

3) 전년도 이월사업비의 불용액 발생 문제

- 금번 교육청 결산결과를 살펴보면 사업예산을 이월한 후 불용한 사례가 적지 않게 발생되고 있는바, 이는 사업예산의 활용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사업예산을 확보하려는 관행에 따른 것으로 사료됨.

특히 전년도 이월사업비 중 제2교육연수원설치 사업, 왕십리고 신설, 동자초 강당 증축 사업 및 경기상고 기타시설 증축은 다음 사업연도 내에 사업을 완수할 수 없다는 것이 예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동 사업예산을 명시이월 한 후 다음 사업연도에 사업예산을 불용 처리하였음.

이러한 예산 집행은 예산원칙의 예외인 이월제도를 남용하는 것으로 사료되므로 추후 이런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생각됨.

[표-23] 전년도 이월사업비 집행 중 90% 이상 불용처리

(단위 : 원)

사업내역	전년도이월액	지출액	집행잔액
	명시이월액	명시이월액	
직속기관환경개선 (제2교육연수원)	1,455,000	50,778	1,404,222
왕십리고학교신설 (토지매입비)	14,958,000	0	14,958,000
동자초강당겸체육관 기타증축 (건설비)	80,000	0	80,000
경기상고기타시설증축	6,500,000	0	6,500,000

4) 학교신설사업 통합발주로 인한 문제

○ 서울특별시교육청은 2013회계연도 결산시 장현중학교 신설 관련 사업비 74억 3천 3백만원과 장이초등학교 신설 관련 사업비 5억 8천 3백만원을 사고이월 하였으나,

이중 2014년도에는 장현중학교 신설 관련 사업비 36억 4천 6백만을 불용처리하고, 이중 장이초등학교 신설 관련 사업비로 34억 2천 8백만원을 전용하여 사용함.⁵⁾

[표-24] 학교신설 사업비 전용

(단위: 천원)

구 분	예산액(2013 사고이월)	집행액	불용액	불용율
장현중학교 신설	7,433,901	3,787,966	3,645,935	49.0%
장이초등학교 신설	582,889	4,010,556	-3,427,666	-588%

○ 이는 지출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예산에 대하여만 동일 편성 목 내에서 통계 목을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한 전용제도를 무시하고 전년도에 지출행위를 한 이월예산을 세부사업내 편성목으로 변경하여 사용한 것으로 지방재정법시행령을 위반한 것으로 사료됨⁶⁾.

- 동 사고이월 사업은 당초 별도의 사업으로 예산심의를 거쳤으나 사업 집행과정에서 동 사업들을 통합발주하여 예산을 관리함으로써 세부사업 내 편성목간의 혼란을 초래하고 회계질서를 훼손하였는바, 향후 업무추진에서 이와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각별한 주의가 필요함.

5) 「2014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결산검사 의견서」에서는 이를 ‘전년도 사고이월액의 부당 전용 및 사고이월의 부당’으로 지적하였음(p96).

6) 「지방재정법시행령」제55조(예산의 전용) ① (생략)

②회계연도 경과 후에는 예산을 전용할 수 없으며, 업무추진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다른 비목에서의 전용을 할 수 없다.

5. 성인지결산

- 지방재정법 제53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3조의2에 따라 2013년부터 성인지 예산제도가 도입되었는바, 성인지 예산제도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양성평등을 제고할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집행하는 제도임.

성인지 결산서는 여성과 남성이 동등하게 예산의 수혜를 받고 예산이 성차별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되었는지 평가하는 것으로 결산개요, 예산의 집행실적, 성평등 효과 분석 및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할 것임.

- 2014회계연도 성인지 결산 지출액은 총 33개 사업의 1,160억 2천 9백만원으로 총 예산현액(7조 9,151억 3천 3백만원) 대비 1.5%이고, 성인지 사업 예산현액(1,185억 7천 1백만원) 대비 97.9%임.

가. 사업분류별 검토

- 사업분류별로는 여성정책추진 12개 사업 예산현액 146억 8천 6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145억 3천 9백만원(99%), 성별영향 분석평가 6개 사업 예산현액 318억 2천 6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313억 2천만원(98.4%), 기타 교육부 지정 15개 사업 예산현액 720억 5천 9백만원에 대하여 지출액은 701억 7천만원(97.4%)임.
- 「여성정책추진사업」의 경우 당초 예산액 160억 9천 3백만원보다 예산현액이 14억 7백원이 감소하였는바, 성인지예산제도의 도입취

지 및 중요성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해 가능한 사업을 축소·감액하는 것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고 하겠음.

[표-25] 사업분류별 성인지 사업 결산 총괄표

(단위 : 원, %)

사업분류	사업개수	예산액	예산현액(A)	지출액(B)	집행률(B/A)
합계	33개	118,480,348,000	118,571,436,740	116,029,550,911	97.9
여성정책추진사업	12개	16,092,966,000	14,685,951,000	14,538,746,380	99
성별영향분석평가사업	6개	31,420,900,000	31,826,181,320	31,320,624,630	98.4
기타(교육부 지정사업)	15개	70,966,482,000	72,059,304,420	70,170,179,901	97.4

나. 성과목표달성도가 저조한 사업

- 성인지 사업의 성과목표 달성도를 보면 성과목표 달성도가 저조한 사례가 있는 바 예컨대 양성평등의 주요 쟁점으로 주로 지적되는 「화장실 개선사업」의 경우⁷⁾ 당초 성과목표는 여성화장실을 남성 화장실대비 74%로 끌어올리기위해 예산현액 110억 17백만원 대비 87.3%인 96억12백만원을 지출했으나, 실제 성과목표달성은 당초 목표인 74%대비 실적 43.2%로서 성과목표달성도는 58.4%에 그쳤음.

이는 투입비용대비 성과목표달성도가 매우 낮은 것을 나타내며 예산지출이 지출이 비효율적으로 이루어졌음을 방증한다고 할 것인 바, 서울시교육청에서는 성인지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실제 지출한 만큼의 목표달성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할 필

7)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성인지결산서 p.117.

요가 있음.

다. 기타 사업별 예산집행 저조한 사업

- 세출예산현액 대비 사업별 예산집행실적을 살펴보면 집행율이 80% 이하이거나 집행율이 100% 이상인 사업들도 5건이 있음. 이중 초과집행 사업의 경우는 예술중학교운영비지원 집행잔액 4천 3백만원을 예술교육활성화 사업에서 전용하여 집행한데 따른 것임.

서울특별시교육청은 성인지예산의 계획적 운용을 위해서라도 20% 이상 불용사업의 발생과 예산 초과집행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도록 보다 합리적이고 정확한 예산추계를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표-26] 집행율 80% 이하 또는 100% 이상 사업

(단위 : 원)

사업명	예산현액	지출액	집행율(%)
기초학력교원전문성신장	38,960,000	30,090,600	77.2
예술중점학교운영비지원	123,510,000	80,000,000	64.8
예술교육활성화(특별교부금)	354,000,000	397,510,000	112.3
학교운영위원회	30,677,000	21,349,800	69.6
교장및기관장임용	72,846,000	57,832,740	79.4

라. 끝으로

- 지방재정 성인지 예·결산제도는 도입 3년의 시행초기단계라 할 것인바 현재까지 자체 추진사업이 전무한 실정이라는 점에서 제도 정착까지 다소간의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다만 성인지 예·결산제도가 여성만의 권익증진이나 우대가 아닌 남녀평등 문화의 확산을 위한 것이므로 향후 서울시교육청은 양성평등이 필요한 사업의 발굴, 양성평등사업에 대한 예산의 지속, 성별수혜도 균형 달성 등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이상으로 「2014회계연도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안승인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